

#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06

2015. 3. 15

##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 | 요약

- 2020년 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으나 공원관련 업무의 수행주체인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공원으로서의 가능성, 생활인프라로서 형평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의 집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현실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함
-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소유주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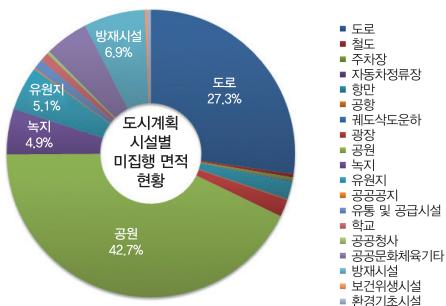
### | 정책제안

- 각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를 개정,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타 도시계획시설과 다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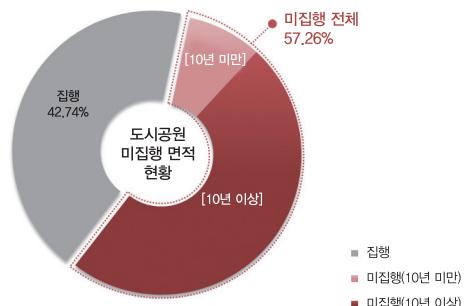
## 1 국내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문제점

### ■ 국내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일단의 부지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국적으로  $931\text{km}^2$ , 서울 면적의 1.5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공원은 가장 큰 면적(약  $600.9\text{km}^2$ , 42.7%)을 차지하고 있음<sup>1)</sup>
- 전국 도시공원의 면적은  $1,049\text{km}^2$ 이나, 이 가운데 약 57.26%(약  $600\text{km}^2$ )정도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약 85%를 차지함



참조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 기준, 2013



참조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 기준, 2013

### ■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동실효 예정

-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sup>2)</sup>고 판단,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림
  - 2020년까지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시설결정이 자동실효 예정임
  -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sup>3)</sup>에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지가 없을 경우 다음날부터 실효가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 · 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1)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과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 참조

2)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관련 1999. 10. 21. 97헌바26 전원재판부 판결문 참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해야 하고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함

### ■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대응 미비

- 2013년 기준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보상비+시설비)는 대략 49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 실효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업에만 약 41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현재 공원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주체인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보상)조차 어려운 실정임
-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452km<sup>2</sup>로 약 75%, 국공유지 면적은 149km<sup>2</sup>로 약 25%를 차지하며, 2020년 실효 대상이 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가 약 76%, 국공유지가 약 24%임
  - 국공유지만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는 사유지나 국공유지 모두 실효 대상임



- 현재 각 지자체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여부와 함께 해제 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상황이나 향후 대책 등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공원은 공원기능을 상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의 경우에 조정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0호)에서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발표, 지자

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관점의 접근으로, 자동실효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의 필요성

### ■ 도시관리 측면

- 2020년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해제 예상지역의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 도시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실효제 실시 이후 불합리한 시설결정에 의한 여러 문제가 해소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이나 일부 도시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난개발과 함께 교통 체증, 조망권 침해, 공원녹지를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 등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진단과 함께 사업추진의 시급성,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예산 우선집행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함
  -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는 현황 파악이나 민원 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진단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적절치 않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과도하게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해제 측면에서도 현재 토지의 이용 상태나 주민의 이용행태, 향후 활용가능성, 주변 지역 측면의 공원녹지 분포 등 정확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함

### ■ 공원이용 측면

- 현실적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해당 지자체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역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및 관련 여건, 향후 집행계획 등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함
  -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 ■ 토지소유 측면

-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실현가능한 집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집행 문제해결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표명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음
  - 실효제 도입으로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의 경우 이제까지 받았던 재산세 감면(50%) 혜택이 사라져 토지소유주에게 부담이 되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제안

## ■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의 기본방향

-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여부나 우선추진사업 등의 결정에 따라 해제, 부분해제, 우선집행, 차순위집행 등 각 관리유형을 구분, 각각에 적합한 절차나 재원 마련방안, 향후 관리방향 등 미집행 도시공원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함
- 사업의 집행여부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 사업의 효과나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역의 정확한 현황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함
- 실현가능한 실행방안 마련
  - 사업의 집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이후 각 도시공원의 여건이나 추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함

## ■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 기능성
  - 도시공원 조성의 근본취지에 적합하고 기본적인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함
- 형평성
  - 도시공원은 중요한 생활인프라이므로 지역 내 소외되는 주민이 가능한 적어야 하며,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량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함

-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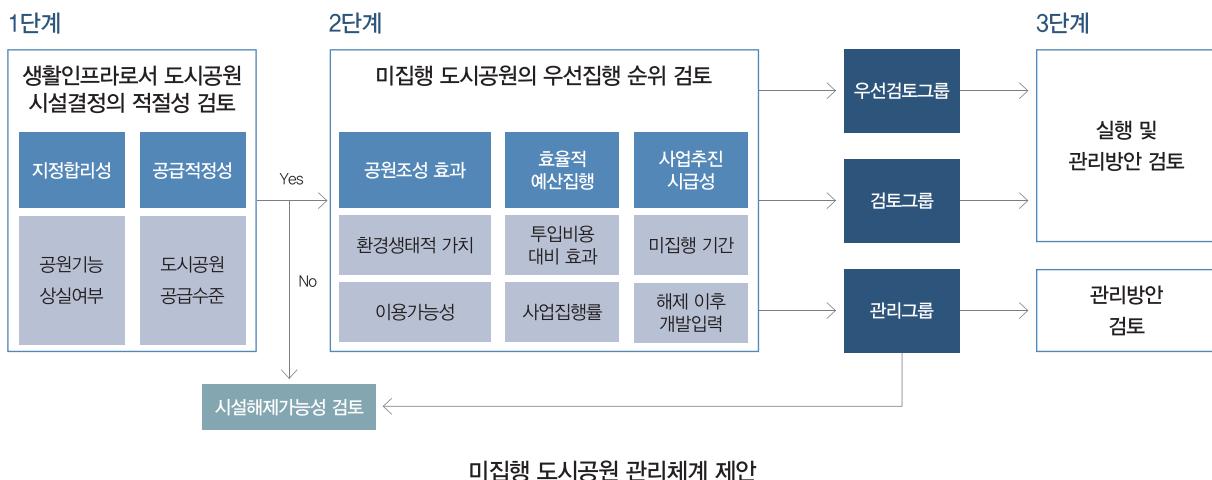
-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한 최소의 비용 투입으로 최대의 사업 효과(수혜대상이나 공원면적의 확대 등)를 얻어야 함

- 합리성

- 의사결정의 과정과 기준이 관련 주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어야 함

## ■ 도시공원 관리체계 구성 및 평가방법

- 도시공원 관리체계는 공원지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1단계)와, 기본원칙에 따라 도출된 3가지 주요 평가항목 및 6가지 세부지표에 대해 개별 공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2단계)로 구성됨



- 1단계 평가내용 및 방법

- 먼저 지정합리성 측면에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공원의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임.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이용 가능성을 공원의 주요기능으로 판단하여 공원의 입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외 면적과 형태의 적절성 및 인근지역 내 중복지정 여부 등을 확인함
- 다음은 지정합리성 평가를 통해 선별된 미집행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지 여부를 파악, 공급이 적정한 경우 해제검토 대상으로 구분함. 이때 공급적정성(형평성)을 평가하여 판단하는데, 공급적적성은 공원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인구수로 환산하여 그 차이 값으로 계산함



1단계 평가과정 예시

### • 2단계 평가내용 및 방법

- 2단계는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크게 3가지 평가항목(공원 조성의 효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따라 각각의 세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각 지표별 점수를 공원별로 합산함
- 등급이 정해져 있거나 단위구분이 용이한 지표는 그대로 그 수치를 점수화하였으며, 연구의 분석결과로 얻어지는 일부 지표(이용 가능성, 비용대비 효과)의 경우 공원별 수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4분위로 나누어 점수화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AHP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함

### 2단계 평가지표 및 방법

| 기본원칙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수집자료 및 분석방법                      | 단위         |         | 점수 | 가중치   |
|------------|-------------|-----------------------------|----------------------------------|------------|---------|----|-------|
| 기능성<br>형평성 | 공원조성<br>효과  | 환경생태적<br>가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등급         | 1등급     | 10 | 0.290 |
|            |             |                             |                                  |            | 2등급     | 7  |       |
|            |             |                             |                                  |            | 3,4등급   | 4  |       |
|            |             |                             |                                  |            | 5등급     | 1  |       |
|            |             | 이용가능성 <sup>4)</sup>         | 10분 이내<br>접근 가능한<br>인구 수         | 명          | 상위25%이내 | 10 | 0.315 |
|            |             |                             |                                  |            | 26~50%  | 7  |       |
|            |             |                             |                                  |            | 51~75%  | 4  |       |
|            |             |                             |                                  |            | 상위75%초과 | 1  |       |
| 형평성<br>효율성 | 효율적<br>예산집행 | 투입비용<br>대비 효과 <sup>5)</sup> | 조성시 비용대비<br>수혜주민 수<br>(공원별 상대순위) | 명/<br>백만원  | 상위25%이내 | 10 | 0.194 |
|            |             |                             |                                  |            | 26~50%  | 7  |       |
|            |             |                             |                                  |            | 51~75%  | 4  |       |
|            |             |                             |                                  |            | 상위75%초과 | 1  |       |
|            |             | 기준 사업<br>집행률 <sup>6)</sup>  | 현재 진행비율                          | %<br><br>% | 75%초과   | 10 | 0.054 |
|            |             |                             |                                  |            | 75~51%  | 7  |       |
|            |             |                             |                                  |            | 50~26%  | 4  |       |
|            |             |                             |                                  |            | 25%이하   | 1  |       |
| 효율성<br>합리성 | 사업추진<br>시급성 | 미집행 기간                      | 미집행 기간                           | 기간         | 20년이상   | 10 | 0.059 |
|            |             |                             |                                  |            | 10년이상   | 5  |       |
|            |             |                             |                                  |            | 10년미만   | 1  |       |
|            |             | 해제이후<br>개발압력                | 용도지역 지구<br>지정 현황                 | 상/중/하      | 높음      | 10 | 0.088 |
|            |             |                             |                                  |            | 보통      | 5  |       |
|            |             |                             |                                  |            | 낮음      | 1  |       |

4)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하여 500m 이내 접근이 가능한 인구수를 평가함

5) 조성비용 대비 수혜 인구의 수로 평가함. 즉 매입비용 백만 원당 인구 수로 주민수로 산정하고 수혜 범위는 유형별 도시공원의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함

6) 결정면적 대비 조성완료 면적을 산정하여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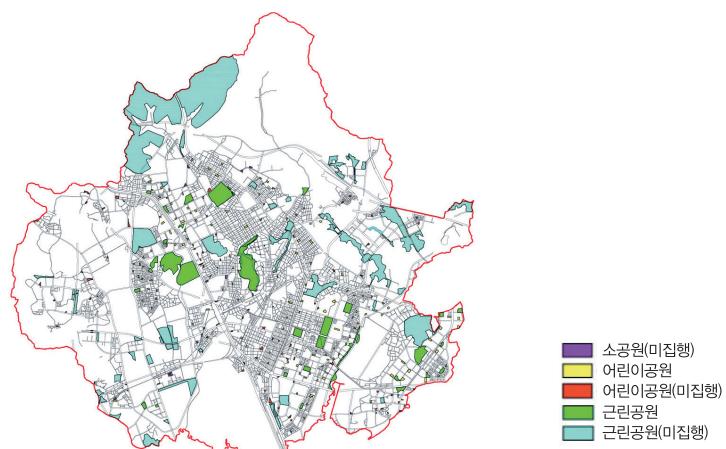
## 4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적용

### ■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황진단(2014. 5 기준)

|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역사공원 | 문화공원 | 수변공원 | 체육공원 |  |
|-------------------------------|-----|-------|------|------|------|------|------|--|
| 도시공원 현황                       | 68  | + 215 | + 86 | + 4  | + 8  | + 31 | + 5  | = 417<br>약 16.4km <sup>2</sup><br>(수원시 면적의 13.5%)    |
| 미집행 도시공원<br>(조성중 + 미조성)<br>현황 | 58  | + 31  | + 37 | + 3  | + 5  | + 30 | + 3  | = 167<br>약 8.8km <sup>2</sup><br>(공원조성 결정 면적의 53.7%) |

- 수원시 1인당 공원면적

- 2014년 인구 기준, 수원시 1인당 공원면적은 13.7m<sup>2</sup>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실효 예상 면적 약 5.5km<sup>2</sup>를 제외하면 1인당 공원면적은 9.6m<sup>2</sup>가 되어 2020년 수원시 도시 기본계획 지표인 12.5m<sup>2</sup>에 미치지 못함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생활권공원)

- 근린공원

- 미집행 면적이 6.6km<sup>2</sup>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의 75%를 차지함
- 대부분 지지대공원이 차지(약 4.3km<sup>2</sup>)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과 다수의 개인소유 지가 혼재하고 있어 집행뿐만 아니라 토지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 또한 영흥공원이나 숙지공원의 경우 공원조성 필요성은 높으나 동시에 개발압력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어린이공원

- 전체 어린이공원 215개소 중 31개소가 미집행 상태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총 10개소 중 3개소(솔숲, 벌말, 인도내 공원)

를 제외하고 7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으나, 2003년 이후 결정된 대부분의 미집행 도시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 소공원

- 2009년 이후 점차 지정이 늘어나 최근 5년 사이 39개소에서 68개소(2014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58개소가 미집행(19개소 조성중) 상태임
-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개인소유의 단독주택 필지인 경우가 많고 특히 현재 24개소에 기존 건축물이 남아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최근 면적 1,000m<sup>2</sup> 이상의 소공원이 지정되고 있어 향후 공원유형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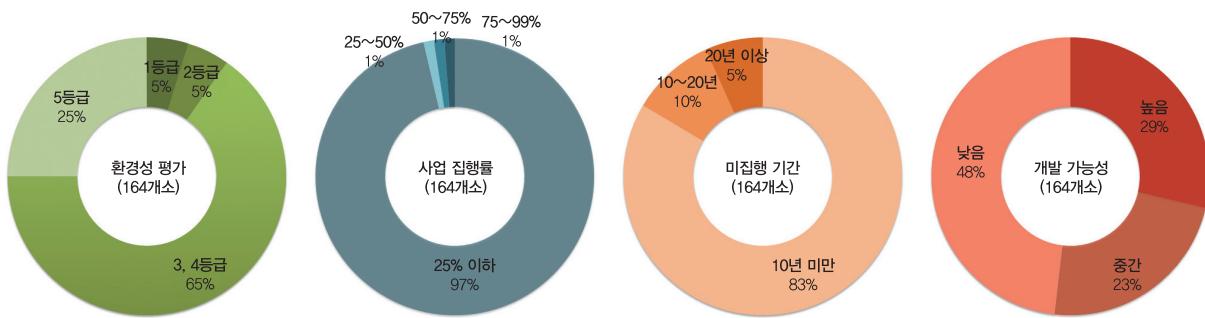
### ■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적용

#### • 1단계 : 공원 지정의 합리성 및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1단계 평가에서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검토하여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인근지역에 중복 지정된 경우 등 총 11개소(소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근린공원 3개소)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공급적정성을 평가하여 3개소(인도내 공원, 벌터 어린이공원, 이목동 근린공원 등)는 해제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8개소는 2단계 평가를 진행함

#### • 2단계 : 공원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총 167개소 중 1단계 평가에서 해제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3개소를 제외하고 164개소를 대상으로 3가지 항목, 6가지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지표별 평가결과

### ■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평가 종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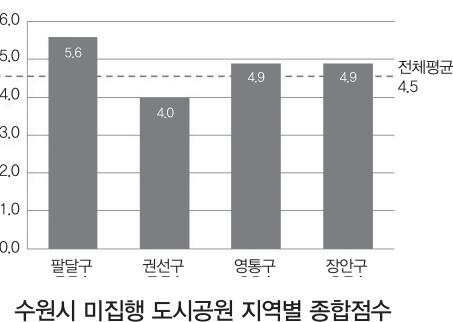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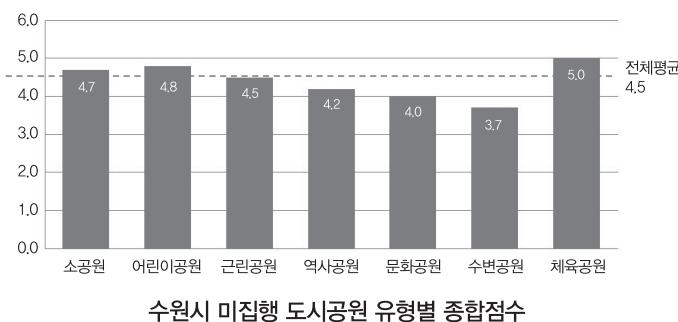
- 공원별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종합점수의 평균은 4.47점이고, 팔달구 인계동의

청소년문화 근린공원이 7.88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 현황분석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공원으로 예상한 숙지공원(6.61점), 솔숲 어린이공원(7.19점), 서낭재 어린이공원(6.90점), 영흥공원(5.74점) 등은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사업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에 해당하는 4.5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공원별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6.0~5.5점 사이에 분포하는 공원의 수가 25개소로 가장 많음. 특히 6.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공원의 수는 35개소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0%를 차지하며, 2.5점 이하 낮은 점수의 공원도 23개소(14%)로 나타남



- 도시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전체 평균인 4.5점 보다 약간 높게 평가되었으며, 주제공원(역사공원, 수변공원)의 경우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냄
- 지역별로 종합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하는 팔달구의 평균 점수가 5.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근 지정된 소공원이 많고 평균 지수가 높아 이용 가능성과 투입비용 대비 효과와 해제이후 개발압력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 종합점수에 따라 미집행 도시공원을 크게 우선검토, 검토, 관리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우선검토그룹은 지역 내 공급이 필요하거나 조성 효과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공원이 주로 선정되었으며, 미집행 기간과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다시 세부 순위를 구분(최우선집행, 우선집행, 집행)할 수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시에는 공원의 여건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그룹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임
- 종합점수 2.5점 미만의 관리그룹은 추후 주변 미집행공원의 확보와 다른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우선검토그룹   | 검토그룹  | 관리그룹   |
|---------|--|---|--|
| 종합점수    | 5.0점 이상  | 5.0점 미만 ~ 2.5점 이상   | 2.5점 미만  |
| 집행/관리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조성을 목표로 초기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 수립</li> <li>• 정부사업, 민간을 활용한 다양한 조성 수법 고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여건별로 부분해제와 조성 여부 검토</li> <li>•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공원별 세부평가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해제를 검토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관리</li> <li>•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 시 영향 고려</li> </ul> |
| 세부구분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집행기간</li> <li>2. 비용대비 효과</li> <li>3. 집행률</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집행기간</li> <li>2. 비용대비 효과</li> <li>3. 개발압력</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성중 여부</li> <li>2. 상위계획현황</li> </ol>                                 |
| 공원개소    | 70   | 71  | 23   |
| 면적      | 1,683,700㎡<br>(전체 미집행 면적의 약 19%)   | 6,940,682㎡<br>(전체 미집행 면적의 약 78%)  | 289,709㎡   |
| 주요공원    | 청소년문화, 조원, 마장산   | 생태, 노송, 지지대   | 고색동, 호매실동  |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 5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관련 지침 개정

- 각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집행 우선순위를 설정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를 개정할 수 있음
  - 특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침(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 기타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국공유지 자동실효대상 제외 검토
  - 2020년 실효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적 이용권 또는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한 것으로, 이것을 국공유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며, 특히 현재 해제대상이 되는 2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자체로 권한이 이 양되기 이전에 지정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 · 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에 ‘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 내용 포함을 검토할 수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마련
  -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도입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 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구체적인 도시관리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다양한 제도의 도입 검토
  - 장기적으로 해제 이후 개발되지 않은 토지소유주의 민원이나 불만에 대응하고, 미집 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활용계약 등의 기존 제 도 보완이나 장기임대계약, 장기매수협약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 기대효과

-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집행과 관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원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함
-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집행 문제해결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표명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음
-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는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와 연계하여 향후 도시차원에 서 도시공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이상민 연구위원(031-478-9642, smlee@auri.re.kr)

심경미 부연구위원(031-478-9654, kmisim@auri.re.kr)

